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종실록』의 성격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최 소 영

# 『예종실록』의 성격

오 종 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최 소 영


# 인준서

최소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 홍석근 

심사위원 ..... 유종국 

심사위원 ..... 홍호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이 논문의 대상은 조선왕조실록 중 『예종실록』이다. 이제까지 조선왕조실록 전반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구체적으로 각 국왕의 실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의 의미와 가치에 접근하고자 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예종이 처했던 정치적·역사적 상황을 살피고 그것이 『예종실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어떠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지 밝히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예종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주목한 점은 예종의 짧은 재위 기간이다. 이로 인해 『세조실록』을 편찬한 실록청에서 연이어 『예종실록』을 편찬하였고, 그 결과 내용의 취사선택과 구체적 서술에 결정력을 행사하는 실록청 1품·2품 관리들은 세조의 훈신이자 예종의 익대공신이라는 정치 이력상의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예종실록』이 『세조실록』에 비해 예우를 받지 못한 것은 그 귀결이었다.

『예종실록』에서 예종이 어떤 왕으로 서술되고 있는지에 대해 재이·상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소 예상 밖이었다. 『예종실록』 기사 안에서 예종의 권능은 하늘과 맞닿은 초월적이고도 신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권능은 선왕인 세조의 개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종실록』을 편찬한 이들은 예종의 권위 근원에 세조의 권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종실록』은 예종이 지니고 있던 본래적 한계로 인하여 『세조실록』에 비해 그 의미와 권위의 규모가 훨씬 작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서술된 왕권의 속성은 초월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그려졌다. 이때 예종의 초월적 권위는 태조로부터 출발하여 세조를 거쳐 계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예종

이 재위 중에 세조를 조선의 중흥군주로 규정하려 애쓰면서 그 권위를 초월적으로 높이려했던 시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한편 예종의 권위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세조실록』에서 세조의 권위를 서술하는 방식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이러한 서술 상의 유사성은 두 실록의 편찬관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 데서 비롯되었다. 『세조실록』 편찬관의 다수가 『예종실록』 편찬관으로 이어진 반면 새로 추가된 인원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조의 훈신세력이면서 예종의 익대공신이었던 특수한 정치적 이해관계 또한 『세조실록』 편찬관에 이어 『예종실록』 편찬관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편찬 과정과 편찬관	
1. 『세조실록』 편찬 후 연이어 편찬된 과정 .....	3
2. 세조 훈신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편찬관 .....	10
III. 災異 및 祥瑞 관련 기사의 특징 .....	17
IV. 『세조실록』으로부터의 연속성 .....	28
V. 결론 .....	36

## 참고문헌

## ABSTRACT

## 부 록

## I. 서론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록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사실 조선왕조실록이란 어떤 역사가가 편찬해낸 특정 역사서의 이름이 아니라, 해당 왕이 사망한 시점에 각각 따로 편찬된 개별 실록을 아울러 부르기 위한 개념어일 뿐이다. 즉 조선 시대에 편찬된 실록은 애초에 각각이 개별 역사서였으며, 이 전체를 두고 ‘하나의 자료’로 묶어서 개념화 하게 된 것은 이를 근대적 학문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단계에 와서 벌어진 일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자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실상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실록에 대한 이해가 그 기반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sup>1)</sup>

한편, 기존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관심이 실록 編纂官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sup>2)</sup> 실록을 편찬할 때에 실제 업무는 편찬관이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분석은 실록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실록이라는 연대기의 주인공이 왕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sup>3)</sup> 실록 연구에서 해당 왕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다는 것은 실록의 성격과 관련한 근본적 측면의 논의

1)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영인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신석호가 각 왕의 실록에 대한 해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개별 실록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신석호 이후, 개별 실록을 다루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으나, 해당 실록의 편찬에 집중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이러한 연구로는 오항녕, 『宣祖實錄』 修正攷, 『한국사연구』 123, 2003 ; 오항녕, 『正祖초반 『英祖實錄』 편찬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 29, 2006 ; 김경수, 『『세조실록』의 편찬과 세조정권』, 『한국사학사학보』 30, 2014 등이 있다), 그 총체적 성격을 구명한 연구는 없다.

2) 1970년대에 차용걸이 실록 편찬관으로서의 史官을 분석한 이래로(차용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태도와 사관의 역사의식』, 『한국사론』 6, 1979) 조선왕조실록 연구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편찬관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1980~2000년대의 실록 연구는 실록편찬기구, 편찬관의 직제, 실록 편찬 과정, 실록 편찬에 활용된 자료를 분석한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연구들은 결국 실록 편찬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편찬관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였는가, 편찬관의 역사 인식이 실록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찬관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오종록,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54, 2001, 283쪽.

를 생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왕과 관련한 조건을 중심에 두고 개별 실록의 성격을 파악해보려 한 것이다. 곧 해당 왕이 처했던 정치적·역사적 상황을 살피고 그것이 해당 실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밝혀보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는 『예종실록』을 채택했다. 여러 실록 가운데서도 『예종실록』은 상당히 흥미로운 조건 속에서 편찬되었다. 예종은 재위 13개월 만에 별다른 治績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했고, 예종의 왕위는 아들이 아닌 조카를 통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예종 사후, 선왕으로서의 예종이 갖는 의미·조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예종실록』의 제반 사항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려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예종실록』의 편찬 과정과, 편찬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예종실록』이 『세조실록』에 연이어 편찬되어야 했던 사정과, 두 실록을 연달아 편찬할 때 무엇이 문제였을지 짚어보려 한다. 2절에서는 『예종실록』 편찬관의 구성과 편찬관의 정치적 지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편찬관의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있었던 실마리와, 이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지 파악해 보려한다.

III장은 『예종실록』의 내용적인 측면을 고찰하기 위한 장으로, 『예종실록』의 기사들이 예종의 왕권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sup>4)</sup>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밝힌 내용을, 선왕인 예종의 역사적 의미와 편찬 책임자들의 이해관계 선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예종실록』의 성격을 제시해보려 한다.

---

4) 본문 3장은 『예종실록』의 기사 가운데 災異 및 祥瑞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시대의 災異 및 祥瑞에 대해 다룬 기존 연구 성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희덕, 『高麗儒敎 政治思想의 研究 : 高麗時代天文·五行說과 考思想을 中心으로』, 一潮閣, 1984 ; 박성래, 『한국 과학 사상사』, 유스북, 2005 ; 이정주, 「세조대(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상서(祥瑞)와 은전(恩典)」, 『민족문화연구』 44, 2006 ; 박세연, 「조선초기(朝鮮初期) 세조대(世祖代) 불교적 상서(佛敎的 祥瑞)의 정치적(政治的) 의미(意味)」, 『사총』 74, 2011)

## II. 편찬 과정과 편찬관

### 1. 『세조실록』 편찬 후 연이어 편찬된 과정

조선왕조실록은 태종 때에 『태조실록』의 편찬이 이루어진 이래로 선왕의 사망 후 수개월 안에 그 편찬을 시작하여, 편찬을 명한 왕의 재위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sup>5)</sup> 그런데 『태조실록』이 태조의 다음 왕인 태종 때에 편찬이 시작되고 완료되었던 것과 달리, 그 이후의 실록들은 왕의 재위 기간, 사망 시기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 편찬이 해당 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한 왕의 재위 기간 내에 시작되지 못하거나, 시작되더라도 재위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그 결과 『예종실록』의 편찬이 이루어지는 성종 때에 이르기까지 『태조실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실록은 한 왕 때에 앞선 두 왕의 실록이 동시에 편찬되었다. 곧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은 세종 때에, 『세종실록』과 『문종실록』은 단종 때에 편찬이 이루어졌던 것이다.<sup>6)</sup>

『예종실록』은 성종 재위기에 『세조실록』과 아울러 편찬되었다. 본래 『세조실록』은 선왕이 사망한 후 몇 개월 안에 실록 편찬이 이루어졌던 조선 시대

5) 정구복, 「朝鮮初期의 春秋館과 實錄編纂」,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297쪽.

6) 『태조실록』 ~ 『예종실록』 편찬시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실록	재위 기간	착수	완성
『태조실록』	1392 ~ 1398	태종 10년 1월	태종 13년 3월
『정종실록』	1398 ~ 1400	세종 6년 3월	세종 8년 8월
『태종실록』	1400 ~ 1418	세종 8년 8월	세종 13년 3월
『세종실록』	1418 ~ 1450	문종 2년 3월	단종 2년 3월
『문종실록』	1450 ~ 1452	단종 1년 정월	세조 1년 11월
『단종실록』	1452 ~ 1455	미상	
『세조실록』	1455 ~ 1468	예종 즉위년 4월	성종 2년 12월
『예종실록』	1468 ~ 1469	성종 2년 12월	성종 3년 5월

의 관례대로 예종 때에 편찬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종이 그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일찍 사망함에 따라 『세조실록』의 편찬 사업은 성종이 계승하게 되었고, 『예종실록』의 편찬은 『세조실록』 완성 이후로 그 순서가 밀리게 되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세조실록』의 편찬은 세조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인 예종 1년 4월에 시작되었다.

A. 宮醞을 春秋館 實錄廳에 내려 주었다. 앞서[先是] 申叔舟·韓明澮·崔恒 등이 왕명을 받들어 梁誠之·李承召·金壽寧·鄭蘭宗·李永根·李克敷·芮承錫·趙安貞·趙益貞 등과 함께 『世祖實錄』을 撰述하고 있었는데 뒤에[後] 또 姜希孟을 참여하도록 명하였다. 7)

『세조실록』 편찬과 관련한 예종의 첫 조처는 實錄廳을 꾸리고 궁은을 내린 것이었다. 이날 예종은 申叔舟·韓明澮·崔恒 등 세 사람에게 姜希孟·梁誠之·李承召·金壽寧·鄭蘭宗·李永根·李克敷·芮承錫·趙安貞·趙益貞 등을 지휘하여 실록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실록청에 宮醞을 내린 날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인 戊午일에는 이미 『세조실록』의 初卷이 완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종이 완성된 『세조실록』의 初卷을 직접 살펴보겠다며 內殿으로 들이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8)

본래 선왕의 실록을 열람하는 것은 조선의 왕에게 금기 사항이었다. 9) 예종

7)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1일(甲寅) 6번째 기사. 『세조실록』 말미에는 『세조실록』 편찬 사업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실려 있는데, 예종 1년 4월에 예종의 명으로 편찬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조실록』 편찬과 관련한 첫 번째 기사인 해당 기사는 4월 첫째 날의 기사이므로, 이날 편찬관을 임명하고, 실록청에 궁은을 내리면서 『세조실록』 편찬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기사 원문의 ‘앞서[先是]’ 행했던 임명과 ‘뒤에[後]’에 행했던 임명의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두 이날에 이루어진 일로, 궁은을 내리기 전에 신숙주 이하를 임명하고, 궁은을 내린 후에 강희맹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5일(戊午) 2번째 기사.

9) 이는 세종이 『태종실록』을 열람하려 했을 때 신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보지 못하

이 『세조실록』의 초권을 직접 보겠다고 한 것은 전통적인 금기를 깨고서라도 실록의 편찬에 깊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실록 기사에 예종의 명에 대해 신료들이 반발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때 예종은 『세조실록』 초권을 실제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예종은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까지 하면서 『세조실록』의 편찬 사업을 추진했으나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세조실록』의 완성은 다음 왕인 성종의 손에 맡겨졌다. 이로써 성종은 예종이 완성하지 못한 『세조실록』과 예종의 실록까지, 두 실록을 완수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되었다.

기왕에 『세조실록』의 편찬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성종의 실록 편찬 사업은 『세조실록』의 편찬을 마무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조실록』 편찬과 관련하여 성종이 가장 처음으로 취한 조치는 본래 6房으로 운영되던 실록청을 3房으로 줄인 것이었다.<sup>10)</sup> 3방을 폐지한 것이 편찬 사업에 있어 어떤 의미의 조처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실록청 운영 방식을 정리해본다. 실록청은 오래 ‘分年分房’의 방식을 통해 실록의 초고라 할 수 있는 初草를 작성하였다. 분년분방이란 堂上官과 郎官으로 이루어진 각 방이 해를 단위로 하여 편찬 범위를 나누어 맡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런 방식에 따라 초본이 완성되면, 각방의 당상끼리 모여 초본의 내용을 검수해 中草를 작성하고, 이를 대신(領館事, 監館事)들이 다시 검수하여 최종적으로 贊定하였다.<sup>11)</sup>

결국, 방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중초를 작성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한 방에서 작성한 초

---

였던 일이나(『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0일(甲申) 2번째 기사), 세종이 이미 이전에 몇 번 살펴보았던 『太祖實錄』을 다시 보려하였을 때, 신료들이 옹지 못한 일이라 반대하여 결국 사관이 抄錄해온 실록 기사의 일부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2일(丙戌) 4번째 기사).

10) 『성종실록』 1권, 성종 즉위년 12월 5일(甲寅) 6번째 기사.

11) 실록청 운영 방식과 실록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한우근, 『朝鮮前期 史官과 實錄編纂에 관한 研究』, 『진단학보』 66, 1988 참고.

초에 대해 나머지 다섯 방의 당상이 검수하여 증초를 만들었던 것을, 세 방이 폐지됨으로써 1방에서 작성된 초초를 3방의 당상이 검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 실록청을 그대로 운영하는 한편, 구조만 더 단순화한 것은 재위 기간 내에 두 실록을 완성해야 하는 사정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록청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발생했을 때 마침내 실록청의 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처가 취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세조실록』의 편찬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예종 1년 4월에 실록청에 공운을 내린 지 나흘 만에 이미 초권이 완성되었던 사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세조실록』은 편찬 사업이 재개된 지 2년 만인 성종 2년 12월에 완성되었다. 그달 15일에 春秋館에서 완성된 실록을 성종에게 올렸고,<sup>12)</sup> 그로부터 3일 후 편찬관들에 대한 行賞이 이루어졌다.<sup>13)</sup>

『예종실록』은 『세조실록』이 撰進된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성종 3년 5월에 찬진 되었다.<sup>14)</sup> 『성종실록』에는 『예종실록』 편찬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전혀 없으므로 그 편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세조실록』을 편찬한 실록청에서 그대로 『예종실록』의 편찬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실록 완성 이후의 기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성종 4년 5월에 大司憲 徐居正이 실록의 印出을 끝낸 춘추관원들에 대한 論賞을 반대하며 올린 차자에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을 두고 ‘다른 관청[他局]을 설치하지 않고 일시에 아울러 찬술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sup>15)</sup>

『예종실록』이 찬진 된 다음 날인 丙午일에는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行賞이 이루어졌다. 먼저 領館事에서 修撰官에 이르는 전원과

12)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15일(壬午) 4번째 기사.

13)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18일(乙酉) 5번째 기사.

14)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9일(乙巳) 2번째 기사.

15) 『성종실록』 30권, 성종 4년 5월 19일(己酉) 2번째 기사.

編修官·記注官·記事官 일부에 대해 물품을 下賜하였고, 다음으로 물품을 하사한 사람을 제외한 편수관·기주관·기사관 일부에 대하여 加資하고, 書員 및 書吏에 대해 서용·가자하거나 근무 일수를 加算해 주었다.<sup>16)</sup>

그런데 행상이 이루어지고 난 얼마 후, 『예종실록』 편찬관에 대한 행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 영의정 신숙주가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세조실록』을 撰進하여 이미 후한 하사품을 받았는데, 이제 『예종실록』을 올리자 또 恩命을 내리셨습니다. 한 가지 일로 거듭 상을 받는 것은 실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다. (후략)<sup>17)</sup>

B. 경연에 나아갔다. 講이 끝나자 司諫 金永堅과 持平 朴時衡이 아뢰기를, “『예종실록』의 修撰官으로 아직 資窮이 되지 않은 자에게 한 資級을 더하도록 명한 것은, 신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세조실록』 修撰 때에 이미 加資하도록 하였는데, 겨우 두어 달을 걸러서 또다시 자급을 더 하도록 명하시니 官爵이 猥濫한 듯합니다. 더욱이 이 實錄은 같은 시기에 結하여 수찬한 것인데, 어찌 다시 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똑같은 선왕의 실록인데, 한 번은 상을 주고 한 번은 주지 않는 것이 어찌 내 마음에 만족스럽겠는가? 이전 사례를 상고해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못하다.” 하였다. 김영건 등이 아뢰기를, “이전에 비록 후한 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마땅히 때에 따라서 헤아려 줄여야 합니다. 또 세조빈전도감에서는 資窮이 된 자는 모두 堂上으로 승진하였는데, 예종빈전도감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았으니, 이는 관작의 남발 때문이었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후략)<sup>18)</sup>

16)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0일(丙午) 3번째 기사.

17)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1일(丁未) 1번째 기사.

18)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壬子) 2번째 기사.

C. 경연에 나아갔다. …… 獻納 崔漢禎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山陵監役과 實錄修撰도 또한 자궁인 자가 있었으나 자급을 올리도록 허락하지 않고 다만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습니다…….”(후략)<sup>19)</sup>

『예종실록』 편찬관에 대한 행상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실록청의 총책임자였던 영관사 신숙주였다.(사료 A) 신숙주는 『예종실록』 편찬과 『세조실록』 편찬을 ‘한가지 일[一事]’로 규정하여, 한가지 일인 두 실록의 편찬에 대해 따로 行賞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을 사양하였다.

며칠 뒤에는 사간 김영견과 지평 박시형이 신숙주의 논지를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사료 B) 이들은 먼저 관작이 濫發되는 일을 문제 삼았다. 『세조실록』 행상에서 加資해놓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가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두 실록은 ‘같은 시기에 함께 수찬한 것[一時兼修]’이므로 따로 행상하는 것은 더욱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사료 B에는 성종이 김영견과 박시형의 간언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보다 10일가량 뒤에 시행된 경연에서 헌납 최한정이 한 말(사료 C)을 살펴보면, 『예종실록』 편찬관에 대한 행상은 끝내 신숙주와 대간들의 요구대로 資窮인 사람에 대한 가자 없이, 단지 물품만 하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종실록』 行賞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행상을 문제 삼은 이들이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찬 과정을 두고 ‘한가지 일[一事]’, ‘함께 수찬한 것[兼修]’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엄연히 시간차를 두고 연이어 편찬된 개별 실록에 대해 억지로 ‘한가지 일’ 혹은 ‘함께 수찬한 것’이라고 규정하면 서까지 행상의 규모를 降殺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관작 남발’이라는 행정상의 문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마도 더 근본적으로는 두 실록이 갖는 역사적

19)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7일(癸亥) 1번째 기사.

의미, 나아가 두 왕이 후대에 획득한 권위의 차이로 인해 같은 수준의 예우를 하는 것이 편치 못했던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정 사업에 대한 포상의 규모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다. 만약 두 실록에 대해 비슷한 규모의 행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두 실록의 중요도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조건을 생각해보았을 때, 『예종실록』이 『세조실록』과 동일한 수준의 의미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먼저, 『예종실록』은 그 편찬 사업에 투입된 시간, 투입된 인물 및 그들이 들인 공력이 『세조실록』에 비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었다. 예종은 겨우 16개월 남짓 재위하고 사망하였고, 따라서 실록청에서 정리해야 할 기록이 『세조실록』에 비해 훨씬 적었을 것이다. 『세조실록』 찬진 후 겨우 5개월 만에 『예종실록』이 완성된 것은 결국 그의 재위기가 워낙 짧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종의 짧은 재위기는, 선왕 예종이 후대에 획득할 역사적 의미 내지 권위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짧은 재위기 동안 예종은 별다른 치적을 남기지 못했다. 이에 비해 세조는 14년의 재위 기간 동안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많은 치적을 남겼으며, 사후에는 후대 왕들에 의해 조선의 중흥 군주로 추송되었던 임금이었다.

요컨대, 『예종실록』이 『세조실록』과 비슷한 시기에 撰進되어 行賞시기가 겹쳤을 때 두 선왕이 후대에 갖는 각각의 의미 내지 권위의 차이로 인해 『예종실록』을 편찬한 당사자들이 먼저 나서서 상을 사양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던 것이다.

## 2. 세조 훈신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편찬관

앞서 살펴보았듯, 『예종실록』은 성종 즉위 이후 『세조실록』 편찬을 위해 재정비된 실록청에서 아울러 편찬한 것이었다. 곧, 『예종실록』의 편찬관은 성종 즉위 이후 『세조실록』을 편찬하는 단계에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종실록』 편찬관 구성상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성종 즉위 이후 『세조실록』 실록청에 대한 재정비 과정까지 아울러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조실록』과 『예종실록』 말미에 편찬관 명단을 비교해보면 (〈표1〉, 〈표2〉 참고),<sup>20)</sup> 『예종실록』 편찬관은 『세조실록』 편찬관에 비하여 總額이 다소 줄었으나 인물은 거의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액은 63명에서 44명으로 총 19명이 줄었으며,<sup>21)</sup> 『예종실록』 편찬 단계에서 새로 투입된 인물은 총 5명(전체 44명의 약 11.4%)뿐이다. 이를 통해 성종 때의 실록청 구성은 예종이 임명했던 인사를 규모를 줄이는 차원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1〉 『예종실록』 편찬관 명단

직 임	성 명	비 고		직 임	성 명	비 고	
		A	B			A	B
영관사 (領館事)	신숙주 (申叔舟)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禮曹判書高靈府院君	同	기주관 (記注官)	정휘 (鄭徽)	行藝文館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同
	한명회 (韓明澮)	上黨府院君兼領經筵事兵曹判書	同		유자분 (柳自汾)	行成均館典籍	同
감관사 (監館事)	최항 (崔恒)	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寧城府院君	同		노분 (盧汾)	行藝文館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新
	강희맹 (姜希孟)	判教寧府事兼知經筵事晉山君	同		김극검 (金克儉)	行藝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同
지관사 (知館事)	양성지 (梁誠之)	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南原君	同		최숙정 (崔淑精)	行藝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同
	정난중 (鄭蘭宗)	同知中樞府事東萊君	同		박시형 (朴時衡)	行藝文館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同
동지관사 (同知館事)	김수령 (金壽寧)	工曹參判福昌君	同		김윤종 (金潤宗)	行藝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기사관
	예송석 (芮承錫)	行義興衛護軍	同		손비장 (孫比長)	行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기사관
					남계당 (南季堂)	行藝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新

수찬관 (修撰官)	김지경 (金之慶)	藝文館副提學 知製敎兼經筵參贊官	同	기사관 (記事官)	남윤중 (南潤宗)	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同
	유권 (柳眷)	藝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	同		김중연 (金仲演)	行司憲府監察兼承文院校檢	同
편수관 (編修官)	고태정 (高台鼎)	尙衣院 正	同		최철관 (崔哲寬)	行司憲府監察	同
	임사홍 (任士洪)	行藝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弘文館典翰承文院校參校	同		채수 (蔡壽)	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同
	성숙 (成俔)	行承文院 參校	同		김윤 (金崙)	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同
	박시형 (朴始亨)	行藝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勘	新		김예원 (金禮源)	行承政院注書	同
	김신 (金新)	行龍驤衛副中郎司直	同		손창 (孫昌)	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	同
	최경지 (崔敬止)	行藝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	同		양자유 (楊子由)	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弘文館博士	同
	노공필 (盧公弼)	行藝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勘	同		김중 (金中)	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弘文館著作	同
					김미 (金楣)	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	同
			강거효 (姜居孝)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同	
			안진생 (安晉生)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	同	
			정이교 (鄭以僑)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同	
			박처륜 (朴處倫)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同	
			김직손 (金直孫)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新	
			이박 (李博)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	新	

\*비고 A는 『예종실록』 부록 명단에 기재된 직임이다.

\*비고 B는 『세조실록』 부록 명단과 비교한 내용이다. 『세조실록』 말미 명단에 기재된 사람은 同으로, 『세조실록』 부록 명단에 없는 사람은 新으로 표기하고 굵은 글씨로 썼다.

- 20) 실록의 편찬관 명단을 참고할 때에는 前後官을 명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세조실록』에 실린 편찬관 명단은 예종 재위기에 실록 편찬 사업에 참여했다가, 성종 즉위 이후 이루어진 실록청 재정비 과정에서 빠진 인물까지도 아울러 표기된 것이다. 반면 『예종실록』에 실린 편찬관 명단은 성종 즉위 이후 재정비된 실록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담당하였으므로, 재정비된 실록청 구성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1) 『예종실록』 편찬관 명단(《표1》)과, 『세조실록』 편찬관 명단(《표2》) 사이에 나타나는 총액의 감소는, 성종 4월 있었던 춘추관 관제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성종 1년 4월에 성종은 예문관의 부제학(정3품) 이하 부수찬(정6품)까지 인원을 증설하면서 모두 지제교와 경연·춘추관직을 겸대하도록 하였다. 《표1》과 《표2》를 살펴보면,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지 못한 『세조실록』 편찬관 21명은 두 명(편수관 김계창, 기사관 김종직)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예문관 겸 경연관이 아니라는 점, 『예종실록』 편찬관을 살펴보면, 수찬관 이하 36명 중 7명(36명 대비 19%)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예문관으로서 춘추관·경연관을 겸한 인물들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양 명단 간의 변화에 (예외의 경우가 다소 존재하지만) 예문관 겸직과 관련한 관제상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2〉 「세조실록」 부록 편찬관 명단

직 입	이 름	비 고		직 입	이 름	비 고	
		A	B			A	B
영관사 (領館事)	신숙주 (申叔舟)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禮曹判書高靈府院君		기주관 (記注官)	노공필 (盧公弼)	行藝文館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이 동
	한명회 (韓明澮)	上黨府院君兼領經筵事兵曹判書			정휘 (鄭徽)	行藝文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감관사 (監館事)	최항 (崔恒)	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寧城府院君			이경동 (李瓊全)	行禮曹正郎兼承文院校理	x
지관사 (知館事)	강희맹 (姜希孟)	判教寧府事兼知經筵事晉山君			박승질 (朴崇質)	行世子侍講文學	x
	양정지 (梁誠之)	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			유자분 (柳自汾)	行成均館典籍	
동지관사 (同知館事)	이승소 (李承召)	禮曹判書兼同知經筵事藝文館提學陽城君	x		김극검 (金克儉)	行藝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정난중 (鄭蘭宗)	同知中樞府事東萊君			최숙정 (崔淑精)	行藝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김수령 (金壽寧)	工曹參判福昌君			허선 (許讓)	行刑曹正郎兼承文院校理	x
	이극돈 (李克敦)	刑曹參判廣原君	x		박시형 (朴時衡)	行藝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예승석 (芮承錫)	行義興衛護軍兼同知成均館事			김자정 (金自貞)	行禮曹正郎	x
수찬관 (修撰官)	김지경 (金之慶)	藝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			이척 (李則)	行議政府檢詳兼承文院校理	x
	조익정 (趙益貞)	行忠武衛司直兼五衛將	x		김윤종 (金潤宗)	行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이 동
편수관 (編修官)	유권 (柳權)	藝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			손비장 (孫比長)	行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이 동
	김유 (金紐)	藝文館直提學知製教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			박효원 (朴孝元)	行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x
	윤효손 (尹孝孫)	通禮院左通禮兼承文院校	x	윤현손 (尹顯孫)	行兵曹佐郎	x	
	고태경 (高台鼎)	掌樂院正		조평 (趙評)	行工曹佐郎	x	
	손순효 (孫舜孝)	行司憲府執義兼承文院校	x	김종직 (金宗直)	行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x	
	임사홍 (任士洪)	行藝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弘文館典翰承文院校		남윤종 (南潤宗)	行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		
	김영건 (金永堅)	行司諫院司諫	x	양수사 (楊守泗)	行刑曹佐郎	x	
	김계창 (金季昌)	行藝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	x	김중연 (金仲演)	行司憲府監察兼承文院校檢		
	성숙 (成叔)	行承文院校		최철관 (崔哲寬)	行司憲府監察		
	박미 (朴楣)	司贈寺副正	x	안침 (安琛)	行藝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		
	현석규 (玄碩圭)	行議政府舍人	x	채수 (蔡壽)	行藝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		
	김성원 (金性源)	行成均館司藝	x	김윤 (金崙)	行藝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홍귀달 (洪貴達)	行司憲府掌令	x				

	정영통 (鄭永通)	行奉常寺僉正	x		안처량 (安處良)	行藝文館奉敎	x
	김신 (金新)	行龍驤衛中部司直			유조 (兪造)	行藝文館奉敎	x
	최경지 (崔敬止)	行藝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			김예원 (金禮源)	行承政院注書	
<p><b>*비고 :</b></p> <p>비고 A는 『세조실록』 부록 명단에 기재된 직임이다.</p> <p>비고 B는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지 못한 인물은 [x]로, 『예종실록』 명단과 비교하여 춘추관 직임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동]으로 표기한 것이다.</p>					손창 (孫昌)	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	
					양자유 (楊子由)	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弘文館博士	
					김중 (金中)	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弘文館著作	
					김미 (金旃)	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	
					강거효 (姜居孝)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안진생 (安晉生)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	
					정이교 (鄭以僑)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박처륜 (朴處綸)	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총액의 감소는 同知館事 이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동지관사는 5명에서 3명으로 2명이, 수찬관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편수관은 15명에서 8명으로 7명이, 기주관은 11명에서 9명으로 2명이, 기사관은 24명에서 17명으로 7명이 줄었다. 편수관의 경우 1/2가량의 인원 증감이 있어 가장 많은 총액 감소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인물의 투입은 편수관·기주관·기사관 이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편수관에는 박시형이, 기주관에는 노분과 남계당이, 기사관에는 김직손과 이박이 투입되었다.

요컨대 『세조실록』의 편찬을 위해 꾸려졌던 실록청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인물의 변화가 많지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직임은 재상급 이하, 특히 郎官인 3품 堂下官 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록청의 낭관들은 堂上官(領館事 이하 修撰官까지를 가리킨다)이 지휘하는 房에 소속되어 史草·時政記와 같은 실록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록들을 정리해 실록의 初本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이 작성한 초본을 토대로 당상관들이 두 번의 검수 과정을 통해 실록의 최종본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들은 실록의 틀을 잡는 기초적인 작업에 이바지할 뿐, 그 최종적 내용에 대한 결정력은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실록의 최종적 내용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1품, 2품 직임의 재상급 관리들은 처음 예종이 『세조실록』 편찬을 위해 임명했던 인물들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동지관사만 그 총액이 5원에서 3원으로 줄었을 뿐,<sup>22)</sup> 영관사·감관사·지관사의 경우는 총액과 인물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표3〉 『예종실록』 실록 편찬관(1·2품) 공신 이력

직 임	이 름	세조 공신 이력			비 고
		정난	좌익		
영 관 사 (領 館 事)	신 속 주(申叔舟)	정난	좌익		예종 1년 4월 실록청 임명
	한 명 회(韓明澮)	정난	좌익		
감 관 사(監 館 事)	최 항(崔 恒)	정난	좌익		
지 관 사 (知 館 事)	강 희 맹(姜希孟)			원종	
	양 성 지(梁誠之)			원종	
동지관사 (同知館事)	정 난 종(鄭蘭宗)				
	김 수 령(金壽寧)			원종	
	예 승 석(芮承錫)				

그런데 이들의 정치력 이력을 살펴보면 정난종, 예승석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조의 훈신세력이라는 정치 이력상의 공통분모를 가진 인물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세조 즉위 초부터 득세했던 인물들이다. 영·감관사인 신속주·한명회·최항 같은 경우 세조 즉위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정난·좌익공신으로, 세조 재위 초기부터 고위 관료로서 활약했으며, 지관사와 동지관사의 경우 강희맹, 양성지, 김수령이 모두 세조 재위기 원종공신으로 책정되었다.<sup>23)</sup>

애초에 예종이 이들을 지목하여 『세조실록』의 편찬을 명했던 것은, 이들의

22) 예종 1년 4월에 임명되었던 인물 중 『예종실록』 편찬에서 빠진 사람은 이승소·이영근·이극돈·조안정 4명이다. 이 중 이영근과 조안정은 『세조실록』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제외된 사람은 이승소, 이극돈 2명뿐이다.

23) 원종공신의 경우 정난·좌익공신에 비해서는 세조와의 이해관계가 긴밀하지 않았으나, 세조 때에 특권층으로서 여러 혜택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충희, 『朝鮮(조선) 世祖代(세조대)(1455-1468) 原從功臣研究(원종공신연구)-1,2等功臣(등공신)을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22, 2013 참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예종은 『세조실록』의 편찬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선왕 세조가 역사 속에서 어떤 왕으로 규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자신의 왕권과도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종의 입장에서는 선왕인 세조를 정당하고도 훌륭한 왕으로 부각하고 싶었을 것인데, 『세조실록』의 내용적 측면에 결정력을 행사할 재상급 관리들이 세조와의 이해관계가 긴밀한 인물일수록 예종이 원하는 것에 가까운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성종 즉위 이후 편찬관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교체되지 않고 계속 그 직임을 이어갔다는 것은, 결국 성종 때에도 세조와 이해관계가 긴밀한 편찬관이 계속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종이 정통성의 측면에서 약점을 갖는 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종은 예종의 아들이 아닌 조카였고,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시점에는 예종의 元子が 생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성종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조의 嫡孫’이라는 繼統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성종은 자신의 왕위 계승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세조의 권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sup>24)</sup> 『예종실록』이 편찬되는 시점까지 예종이 생전에 『세조실록』 편찬을 위해 임명했던 세조 훈신 세력들이 계속해서 편찬을 총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조 이후 후대 왕들의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재상급 편찬관의 정치적 이해는 예종과도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었다. 이들이 예종 때부터 성종 때에 이르기까지, ‘院相’으로서 정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종 즉위년에 발생했던 ‘南怡의 獄’이

---

24) 『세조실록』의 즉위년칭원 방식이 끝까지 고수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세조에 대한 卽位年稱元은 예종 재위기에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세조실록』의 기록이 즉위년칭원의 방식에 따라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성종의 왕권과 관련해서도 세조의 즉위과정을 나라 개창에 준하는 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즉위년칭원에 대한 의미는 뒤에서 다시 서술하도록 하겠다.

라는 정치적 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세조 재위 말엽 발생했던 이시에 반란 사건으로 인해 신숙주·한명회 등, 세조의 훈신 세력은 한동안 정치적 침체기를 겪었다. 이들은 이시에 반란 사건 이후 예종 재위 초반까지, 신흥 세력으로 대두한 귀성군 李浚과 남이로 대표되는 종친 및 신흥 무장 세력과 정치권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남이의 옥’을 통해 政敵이었던 그들을 ‘역적’으로서 제거하는 한편,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다시 공신에 녹훈되면서 그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sup>25)</sup> 그리고 남이의 옥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세조 훈신 세력이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린 것은 임금인 예종이었다.<sup>26)</sup> 즉, 이들이 편찬하게 될 『예종실록』은, 이들이 정치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재기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왕의 역사였던 셈이다.

---

25) 세조 재위기 말엽의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두희, 「朝鮮 世祖 - 成宗朝의 功臣研究」, 『진단학보』 51, 1981 참고.

26) 남이 사건 조사 초반에 남이 측(남이와, 남이 편에선 증인들)은 ‘한명회가 立嫡을 논한 것을 보고 역심을 품었다고 예상했다.’고 하는 등, 한명회의 반란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예종은 사건이 고발되는 순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남이의 반란 정황을 조사하는 데에만 적극적이었고, 남이 측에서 제기한 정황(한명회의 반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더욱이 남이가 직접 지목한 한명회에 대해서는, 한명회가 對辯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두 남이가 지어낸 말일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기까지 하였다.(『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4일(庚戌) 4번째 기사)

### Ⅲ. 災異 및 祥瑞 관련 기사의 특징

『예종실록』에서 일정시기까지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세조의 사망과 관련한 사안들이다. 세조의 사망 이후, 그 시신과 혼을 수습하는 과정은 예종이 임금으로서 주선한 최초의 국사이며 그의 정당한 왕위 계승을 주변에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는 예종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었으므로, 『예종실록』에는 이와 관련한 일정과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분량상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오례」가 정립된 이후, 조선왕실의 국상은 「오례」 흥례조를 바탕으로 치러졌다. 「오례」에는 흥례 의식으로 총 60여 가지의 의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50여 개의 의식은 명 사신을 통해 황제가 선왕에게 내린 賻物과 諡號를 전해 받는 날에 완료되었다. 이날 시호와 부물을 맞이하고 받드는 의식인 迎賜諡祭及弔賻儀, 賜賻儀, 賜諡儀, 焚黃儀를 치르고 나면 「오례」에 규정된 흥례 의식으로 아직 치러지지 않은 것은 1·2·3 주기 제사와 3년 상을 마친 후 신주를 부묘하는 의식뿐이었다.<sup>27)</sup>

세조의 국상 역시 대체적으로는 「오례」에 규정된 절차와 의식에 맞추어 진행되었다.<sup>28)</sup> 명으로부터 세조의 시호를 받는 의식은 6개월 뒤인 2월에 치러졌다. <sup>29)</sup> 즉 예종은 즉위 이후 6개월간 50여 개가 넘는 흥례의식을 모두 치른 셈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흥례 의식을 주선하는 과정은 예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었으므로 의식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모든

27) 예종은 30여 개월의 국장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1주기 제사인 練祭를 지낸 2개월 후인 11월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연제 이후에 남은 사망 2주기 제사인 상제, 27개월째에 지내는 담제, 그리고 종묘에 세조의 신주를 모시는 것과 관련한 절차들은 예종이 치르지 못하고 예종의 왕위를 계승한 성종에 의해 치러졌다.

28) 「오례」의 의식은 유교식으로 정리된 것인데 세조의 국상은 오례의 절차를 토대로 진행하는 한편 불교 의식을 병행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나래, 「조선 초기 세조 국상 연구」, 『역사민속학』 45, 2014 참고.

29)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16일(辛未) 1번째 기사.

과정이 실록에 실렸다. 그 결과 『예종실록』의 즉위 이후 6개월간의 기사는 예종의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보다는, 세조를 위한 흉례 의식과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시호 관련 의식이 완료된 2월 이후의 실록 기사 역시 예종의 일상적인 국정 운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중국의 사신들은 세조의 시호 관련 임무를 끝내고 나서도 얼마간 계속 조선에 계속 머물렀는데, 사신들이 머물렀던 3개월 동안 그들의 거취를 다루는 기사가 해당 기간의 기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 사신들이 도성을 떠나는 5월까지, 『예종실록』 기사 건수의 1/3은 사신 관련 기사이다.

세조 사망 관련 문제에 시호 관련 의식 이후의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기록까지 포함한다면, 16개월도 안 되는 예종 재위기의 2/3에 달하는 약 9개월간의 실록 기사에서 세조의 사망과 관련한 사안들이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 셈이다. 그렇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예종실록』에서 예종의 본격적인 국정 운영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가 구성된 부분은, 사신이 도성을 떠나는 5월부터 예종이 사망하는 11월에 이르는 약 6개월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이제 예종의 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실록의 내용적 측면에서 예종이 어떤 왕으로서 서술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종이라는 임금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를 선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징이 실록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예종 1년 7월의 가뭄과 祈雨 관련 기사를 살펴보려 한다.

예종 1년 7월 辛卯日, 예종은 승정원에 전교를 내려 가뭄이 오래 이어지고 있으니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한편,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30) 『예종실록』은 예종 재위 1년 12월까지 기록이 되어있다. 예종 사망하는 11월 28일 이후의 기사는 예종의 사망 사실과 嗣王인 성종이 예종의 사망을 수습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않는 원인이 冤獄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sup>31)</sup> 이로부터 전교가 내려진 다음 날인 壬辰일에서 戊戌일에 이르는 7일 동안 비를 내리는 데 효험이 있다고 여겨지던 여러 전통적 기우 행위가 예종의 주도로 시행되었다.<sup>32)</sup> 특히 기우제의 마지막 날인 戊戌일에는 세조의 魂殿인 永昌殿에 직접 의식을 거행했는데, 『예종실록』의 이날 기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우제를 지내는데 축문을 다 읽자마자 비가 내렸다.”고 기록하였다.<sup>33)</sup>

〈표4〉 7월 辛卯일부터 戊戌일 까지 시행된 기우행위<sup>34)</sup>

일 시	내 용
7월 辛卯	가뭄을 선언함
7월 壬辰	北郊에서 祈雨하고 興天寺, 圓覺寺에서 祈雨佛事를 시행함
7월 癸巳	畫龍祭와 蜥蜴祈雨를 시행함
7월 甲午	소격전에서 祈雨醮를 시행하고 內佛堂과 興德寺에서 기우불사를 시행함 형조에 옥수가 많이 지체되어……기한을 정하여 판결하도록 함 저자를 銅峴으로 옮기고 崇禮門을 닫게 함
7월 丙申	義禁府·刑曹·漢城府·掌隸院의 오랫동안 체류된 獄訟을 검찰하도록 함
7월 丁酉	한성 판관 배지눌·신윤원, 참군 이근·김양전이 체옥한 것을 국문하게 함
7월 戊戌	임금이 직접 永昌殿에 기우제를 시행함. 비가 내림

가뭄 해결에 소요된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의 발생은 예종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가뭄의 해결 역시 예종을 통해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졌다. 가뭄을 선언했던 신묘일의 전교에서 예종은 가뭄의 발생 원인을 冤獄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감옥수에 대한 판결이 늦어져 죄 없이 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원망이 쌓였기 때문에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는 자신의 失政이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 한 것

31)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10일(辛卯) 1번째 기사.

32) 이러한 기우 행위는 조선 초기부터 으레 시행되어 오던 으로 보인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20일(庚辰) 1번째 기사에는 예조(禮曹)에서 『文獻通考』와 『詳定古今禮』를 참고하여 가뭄였을 때 시행할 기우 행위를 제시한 ‘憂旱事宜’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예종이 7월에 시행한 기우 행위들과 유사하다.

33)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17일(戊戌) 1번째 기사.

34) 『표4』는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11일(壬辰) 1번째 기사 ; 12일(癸巳) 1번째 기사 ; 13일(甲午) 1번째·4번째·5번째 기사 ; 5일(丙申) 1번째 기사 ; 16일(丁酉) 2번째 기사 ; 17일(戊戌) 1번째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인데, 그 전교를 들은 신하들 역시 임금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답변하였으므로<sup>35)</sup> 임금과 신하 모두 자연재해의 원인이 예종에게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이후의 가뭄 관련 기사들은 예종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처들을 취했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예종은 며칠에 걸쳐 滯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처를 시행했고 그 일환으로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는 예종이 실정을 바로잡고 하늘에 기도함으로써 비를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종이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시점에 비가 내림으로써 이제까지 예종의 가뭄에 대한 문제의식이 올바른 것이었으며, 그 문제의식에 입각한 조처들 역시 모두 유효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곧 『예종실록』 해당 기사 안에서 예종은 자연과 호응하는 존재로서 가뭄이라는 자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는 신이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 것이다.

조선 시대의 자연현상에 대한 인식은 건국 초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교적 자연관에 입각하여 체계화된 바 있다.<sup>36)</sup> 유교의 자연관은 임금을 하늘의 天命을 통해 통치의 자격을 얻은 존재로 규정하고,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우주의 주재자인 하늘이 임금의 정치에 대해 시비선악을 판단하여 그에 대한 상벌·경계의 의미로서 내려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하늘이 임금에게 내리는 譴責으로 이해되었는데, 임금의 실정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이 쌓이면 하늘이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sup>37)</sup>

35)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10일(辛卯) 1번째 기사.

36) 이는 『고려사』에 「천문지」와 「오행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 「천문지」, 「오행지」에 나타나는 유교적 자연 인식과 관련해서는 이희덕, 『高麗儒敎 政治思想의 研究 : 高麗時代天文·五行說과 考思想을 中心으로』, 一潮閣, 1984 참고. 단, 이희덕은 『고려사』에 나타나는 자연관에 대해 고려 시대 사람들의 인식으로 규정하였는데, 『고려사』가 세종 31년(1449)에 편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고려사』에는 이를 편찬한 조선 초기 인물들의 인식 역시 개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7) 하늘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한·당시기 유학의 사조이다. 주자 단계에 이르러 하

이러한 자연관은 임금의 失政이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의 정치 행위를 윤리·도덕적으로 제어할 소지를 지닌 것이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임금을 우주의 주재인 하늘의 선택을 받아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이한 존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통치자에게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교적 자연관에서 설명하는 왕의 권위를 조선 왕의 권위에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조선은 천명을 명분으로 개국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 제후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후국의 입장에서 조선의 하늘은 명 황제의 하늘이어야 하지만, 천명을 받아 개창된 왕조의 입장에서 모든 자연현상은 임금의 왕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에 이 문제는 조선 사회 내부적으로는 조선의 영역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은 조선의 왕의 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취하되, 외부에는 이런 입장을 숨기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sup>38)</sup> 조선 하늘이 발생시킨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조선 왕의 일로서 간주한다는 인식은 실록에도 적용되었다. 『태조실록』을 비롯한 모든 실록에 천문 현상에 대한 기사가 관측 당일의 첫 번째 기사로서 기록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 하늘에서 발생한 해와 달과 별의 일을 조선 임금의 일, 역사로 간주하였던 결과이다.

요컨대 가뭄이라는 자연 현상이 예종의 실정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판단은 조선의 영역에서만큼은 예종이 천명을 받은 천자에 준하는 존재라는 인식 선상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때 예종은 하늘과 소통하여 자연현상을 초래하기도

늘은 인격적 존재라기보다는 법칙, 질서, 원리에 해당하는 개념적 존재로 이해되었다. 조선 초기 사회의 집권층의 인식은 하늘을 이미 인격신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임금의 통치행위에 대한 명분론적 차원에서 하늘은 인격신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의례나 역사기록에서 여전히 하늘은 인격신으로서 여겨졌다. (오종록,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54, 2001, 287쪽)

38) 조선왕조는 개국 초부터 열심히 천문연구에 매진하여 특히 세종 때에는 대단한 발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세종은 천문연구 사실을 중국 사신에게는 비밀로 시행하였다. (박성래, 위의 책, 493쪽)

하고 해결하기도 하는 신이한 권능의 소유자로서 규정되는 것이다.

여러 자연 현상 가운데서도 비에 대한 문제는 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예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사안이었다. 그중에서도 7월의 가뭄 기록은 여타의 비 기록 보다 훨씬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임금이 직접 기우제를 지냈고,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자 실제 비가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후 예종의 行狀과 誌文에까지 실렸는데,<sup>39)</sup> 이는 이 사건이 예종의 행적 가운데에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예종이 기우를 지내 효험을 본 장소가 세조의 魂殿인 永昌展이었다는 점이다. 조선 역대 왕들이 기우제를 지냈던 대상은 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선왕의 혼전이 기우의 대상이 된 사례는 없으며 태종, 세종, 문종, 단종 때에도 선왕의 국상 기간에 기우제를 지낸 적이 있으나 종묘가 아닌 혼전에 기우한 사례는 없다. 이는 후대도 마찬가지이다.<sup>40)</sup>

이날 기우제를 지낸 대상은 세조의 혼이었으므로 제사에 응답한 존재는 세조의 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록에서 자연과 호응하는 권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1차적으로 제사를 주선한 예종이겠지만 세조의 경우 그 제사를 받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비가 내린 데에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한 존재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월 기우제 관련 기사들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징은 『예종실록』에 수록된 災異 및 祥瑞 관련 기록 전반에서 또한 나타난다. 『예종실록』에는 ‘상서’라고 지칭되는 특정한 동물이나 현상이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39)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2월 11일(庚申) 1번째 기사 ; 18일(丁卯) 2번째 기사.

40) 『조선왕조실록』 DB에 祈雨 원문 검색으로 나오는 결과는 1,847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기우 행위와 관련한 기사로 기우제를 지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선왕의 혼전이 기우 대상이 된 경우는 필자가 찾아낸 것으로는 예종 1년 7월 17일(戊戌) 1번째 기사가 유일하다.

유교적 자연관의 맥락에서 예종의 德治에 대한 하늘의 화답으로 인식되던 사안이었다. 『예종실록』에는 흰 꿩이 5회, 흰 사슴이 1회씩 상서로 여겨져 예종에게 진상되었고, 흰 까마귀가 예종 재위 1년 윤2월 말과 3월 초에 연이어 발견되어 상서로 여겨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41)</sup>

예종 1년 윤2월 28일에 대궐의 후원에 흰 까마귀가 출현하자 예종은 이것이 자신이 寡德한 탓으로 생긴 현상이 아닐까 염려하였는데,<sup>42)</sup> 이에 대해 승지들은 ‘정성이 종묘(宗廟)를 감동하게 하면 흰 까마귀가 이른다.’고 하는 『玉海』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흰 까마귀의 출현은 염려할 일이 아닌 祥瑞임을 주장하였다.<sup>43)</sup> 한편 대신들 역시 흰 까마귀의 출현을 명백한 상서로 간주하면서 예종에게 進賀할 것을 거듭 청하였다.

A. 영의정 한명회가 백관을 거느리고 吉服차림으로 흰 까마귀를 하례하였다. 그 箋文은 이러하였다. “……살펴보건대 지극한 정치가 융성해지면 반드시 상서가 그에 응하여 나타나는 법이니, 虞舜의 시대에는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고, 成周 때에는 꿩이 貢物로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이제 慈情이 있는 까마귀가 바로 諒陰의 때에 이르렀으니 오직 속에서 우

41)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종 류	횟수	기 사	비 고
白雉	1회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1월 25일(庚辰) 3번째 기사	·
	2회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4일(己丑) 3번째 기사	請行賀禮/不允
	3회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6일(辛卯) 4번째 기사	·
	4회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9일(甲辰) 2번째 기사	·
	5회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14일(乙未) 2번째 기사	·
白鳥	1회(A)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28일(癸未) 3번째 기사	·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29일(甲申) 2번째 기사	敢陳賀禮/(辭)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1일(乙酉) 1번째 기사	請陳賀/許之
	時集(B)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1일(乙酉) 2번째 기사	·
(A)+(B)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1일(乙酉) 3번째 기사	陳賀/箋	
白獐	1회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0일(癸巳) 2번째 기사	請陳賀/不允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1일(甲午) 1번째 기사	請陳賀/不允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2일(乙未) 4번째 기사	請陳賀/許之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3일(丙申) 2번째 기사	陳賀

42)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28일(癸未) 3번째 기사.

43)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29일(甲申) 2번째 기사.

러나는 정성이 묵묵히 契合한 까닭으로 흰 까마귀가 빛을 더한 것입니다. ……소고(昭考, 선친)가 하늘에 계심을 생각하여 길이 효도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이에 反哺하는 새(까마귀)가 궁궐 후원에 나타났으므로 진실로 천고(千古)에 보기 드문 일이니, 사방에서 함께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sup>44)</sup>

위 사료 A는 흰 까마귀의 출현을 慶賀하기 위해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한명회가 백관을 이끌고 예종에게 하례하면서 올린 箋文의 내용의 일부이다. 이 전문은 임금의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면 반드시 그에 짝하는 상서로운 증표[禎符]가 있게 마련이며, 유교에서 이상적 통치자의 전형으로 꼽는 舜 임금이나 周公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도 봉황과 흰 꿩이 출현했다고 하면서 지금 나타난 흰 까마귀가 예종의 훌륭한 정사에 짝하여 나타난 상서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더욱이 이제 慈情이 있는 까마귀가 바로 諒陰(임금의 상중)의 시기에 이르렀다.[矧今慈鳥之臻, 正值諒陰之際]’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까마귀가 대변하는 ‘부모에 대한 孝’를 강조하고 아울러 세조의 喪중임을 짚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상서가 출현한 것이 선왕인 세조와 관계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이전에 승지들이 전고로 제시한 『玉海』의 경우 흰 까마귀 상서를 ‘宗廟’라는 보다 넓은 범위의 선왕과 관련하여 인식한 것이라면, 한명회가 올린 전문은 예종의 부왕인 세조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서를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종실록』에 실린 다른 흰 빛깔 짐승 상서들은 대개 예종이 하례를 거부하거나, 하례를 받았더라도 실록에는 받았다는 사실만 간단히 기록되거나, 아예 하례 여부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흰 까마귀 상서만큼은 이것이 상서로 규정되는 과정과, 하례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흰 까

44)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1일(乙酉) 3번째 기사.

마귀 상서는 예종 재위기에 발생한 유교적 상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상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현상에 역시 세조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예종실록』에는 유교적 상서뿐만 아니라, 불교적 맥락의 신이한 현상이 또한 상서로 규정되어 기록되었다. 불교적 상서의 경우 유교적 상서가 비교적 조심스러운 과정을 통해 상서로 규정되는 것과 달리<sup>45)</sup> 언급된 순간부터 상서로 규정되어 백관에게 하례를 받고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sup>46)</sup>

불교적 맥락의 기이한 현상에 대한 기록은 그 이전 실록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상서로 명명되기 시작했던 것은 세조 때부터였다. 세조 8년 11월 세조가 龍門山 上院寺에서 관세음보살을 보고 이를 기념하려 사면령을 내

45) 유교에서 상서는 堯舜 같은 통치자의 至治에 대한 우주 주재자의 화답으로 인식되던 사안이었다. 따라서 임금이 이를 ‘상서’로 인정하는 것은 곧 요순과 같은 성군을 자처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세조 이전까지 조선의 임금들은 자기 수양과 謙讓의 의미에서 특별한 자연 현상이 발생하여도 그에 대해 ‘상서’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세조는 특이한 자연 현상에 대해 비교적 쉽게 ‘상서’로 인정하였다. 한편 불교적 상서의 경우 교훈적 맥락이 훨씬 덜하여 이를 상서로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덜하였다. 세조는 유교적 상서에 더불어 불교적 상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주 사면령이나 賜恩을 하여 자신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을 회유하는 데에 활용했다. (권연웅, 『世祖代의 佛敎政策』, 『진단학보』 75, 1993, 210쪽 ; 이정주, 『세조대(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상서(祥瑞)와 은전(恩典)』, 『민족문화연구』 44, 2006, 244~247쪽)

46) 예종 재위기 발생한 불교적 상서 종류와 발생 횟수, 기사 출처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종류	횟수	기사	비고
舍利分身	1회	『예종실록』1권, 예종 즉위년 10월 9일(乙未) 2번째 기사	赦宥
	2회	『예종실록』4권, 예종 1년 윤2월 29일(甲申) 3번째 기사	赦宥
	3회	『예종실록』6권, 예종 1년 6월 6일(戊午) 3번째 기사	箋, 赦宥
	4회	『예종실록』7권, 예종 1년 8월 13일(甲子) 3번째 기사 『예종실록』7권, 예종 1년 8월 14일(乙丑) 3번째 기사	赦宥 箋
如來現象	1회	『예종실록』1권, 예종 즉위년 10월 23일(己酉) 2번째 기사	赦宥
天雨四花	1회	『예종실록』7권, 예종 1년 9월 11일(辛卯) 2번째 기사	赦宥
		『예종실록』7권, 예종 1년 9월 12일(壬辰) 2번째 기사	箋
慶雲	1회	『예종실록』5권, 예종 1년 5월 7일(庚寅) 1번째 기사	.

해당 표 ‘종류’의 마지막 항목인 慶雲의 경우, 구름이라는 자연 현상에 대해 경사스럽다(慶)는 의미를 부여하였으므로, 祥瑞가 분명하지만, 이것이 어떤 사상적·종교적 맥락의 祥瑞인지 해당 기사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3일(庚寅) 1번째 기사에, ‘慶雲’을 하례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날의 경운은 바로 전날인 7월 2일(己丑)에 세조가 사리분신으로 인해 백관을 하례 받았을 때 나타났던 五色雲을 지칭한 말이었음을 참고하여, 불교적 맥락의 상서로 분류하였다.

리면서 이전까지 조선의 역대 왕들이 異蹟으로 간주하던 불교적 맥락의 신이 한 현상이 祥瑞로 규정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세조 재위 기간 내 내 불교적 상서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sup>47)</sup> 불교적 현상을 ‘상서’로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세조는 천명을 받은 군주이면서 동시에 부처에게도 닿아있는 존재로서, 유교적 세계와 불교적 세계 양쪽을 아우르는 확장된 영역에서 두루 권능을 발휘하는 임금으로 규정되었다.

예종 때에도 세조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불교적 맥락의 상서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세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sup>48)</sup>

B. 이날 새벽 빈전 곁의 法席에서 舍利分身하였다.(후략)<sup>49)</sup>

C.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佛事를 殯殿 곁에 차렸는데 佛殿의 如來가 동북쪽에 現相하였다. ……”(후략)<sup>50)</sup>

D. 御書로 형조와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세조께서 精勤 하시던 날에 사리 8백여 개가 분신하였고, 또 圓覺寺에 거둥하여 사리 70여 개를 얻었는데, 오늘 열어보니 또 2백 45개가 분신되었다. ……” 하였다.<sup>51)</sup>

E. 새로 만든 靑玉 佛像이 완성되었다. 불상을 꺾내로 받들어 맞아들였는데, 舍利分身 하였다.(후략)<sup>52)</sup>

47) 이정주, 위의 글, 239~240쪽.

48) 예종 재위기 발생한 불교적 상서 가운데(주 45)참고) 예종 1년 8월 발생한 사리분신, 예종 1년 5월 발생한 경우, 두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서 기록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49)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9일(乙未) 2번째 기사.

50)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3일(己酉) 2번째 기사.

51)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29일(甲申) 3번째 기사.

52)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6일(戊午) 3번째 기사. 해당 기사에는 새로 청옥 불상을 만든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사료 E를 통해 이 청옥 불상이 세조를 위해 새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F. 御札로 전교하기를, “……전에 세조를 위하여, 工人에게 靑玉으로 석가여래 및 십육 나한 등의 형상을 만들라고 명하였었는데, 오늘 맞아 들여서 보니 舍利分身이 수 없이 많다…….”(후략)<sup>53)</sup>

G. 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금 天雨四花의 기이한 일이 있으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내가 사면하여 주고자 하니, 초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후략) <sup>54)</sup>

즉 세조의 殯殿, 影殿 등 세조의 영혼이 모셔져 있다고 여겨지던 장소나, 세조를 위해 만든 불상과 같이 세조 사후에 세조를 기리기 위한 장소·물건, 혹은 세조가 불교적 상서를 통하여 얻었던 사리와 같이 세조 생전의 불교 관련 행적과 닿아있는 물건들에서 상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예종실록』에 수록된 모든 종류의 재이·상서 기사는 예종을 우주의 주재자인 하늘이나, 부처와 같은 神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초월적 권능을 가진 존재로 규정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언제나 예종의 권능이 발휘되는 계기로서 혹은 그 권능에 화답하는 존재로서 세조가 등장하였다. 이는 예종이 소유한 초자연적인 권능이 결국 세조에게서 근간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예종의 왕권에 대해 세조에 대한 계통성을 강조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53)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3일(甲子) 3번째 기사.

54)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11일(辛卯) 2번째 기사. 이 天雨四花는 전날인 10일(庚寅)에 정희왕후가 粹嬪과 함께 세조의 影殿인 崇恩殿에 갔다가 還家하던 중에 목격한 것이다.

#### IV. 『세조실록』으로부터의 연속성

예종은 1468년 9월에 즉위하여 불과 15개월가량 지난 이듬해 11월<sup>55)</sup>에 사망하였고, 그 짧은 재위 기간마저도 대부분 선왕 세조의 사망과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그가 임금으로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기는 세조의 시호를 전하러 왔던 중국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재위 1년 5월부터다. 그렇다면 결국 그는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사망한 셈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가될 치적을 남기기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더욱이 1469년 11월에 그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을 때, 그의 왕위가 아들이 아닌 조카 者乙山君(成宗)에 의해 계승되면서, 선왕 예종이 후대의 왕에게 갖는 계통 차원의 의미도 희석될 소지를 갖게 되었다.<sup>56)</sup>

이러한 상황에서 예종의 실록이 갖는 가치, 혹은 의미는 당연히 『세조실록』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었다. 『예종실록』과 『세조실록』이 거의 같은 시기에 찬진되었을 때, 『예종실록』 편찬관에 대한 行賞이 『세조실록』 찬진 때에 비교하여 降殺된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종실록』의 중요도가 『세조실록』에 비해 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던 사정을 시사한다.

그런데 예종의 특수한 조건들로 인해 『예종실록』이 『세조실록』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종실록』에 기록된 예종의 왕권은 상당히 초월적으로 서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나 祥瑞로 지칭되는 특정 자연 현상들이 예종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것으로

55) 예종 재위 1년에는 윤2월이 있으므로, 예종 즉위년 9월부터 예종 1년 11월까지 총 16개월이 된다.

56) 성종은 재위 2년부터 私親인 懿敬世子를 추승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그러한 노력 끝에 의경세자는 성종 6년 德宗이라는 묘호를 부여받았고, 성종 7년에는 예종의 大室에 同附되었다. 이로써 성종에 대한 예종의 계통적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셈이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예종조카 잘산군이 즉위하는 순간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술되었으며, 특히 불교적 맥락의 祥瑞까지 동원되어 예종의 초월적인 권능이 강조된 것이다. 이는 예종을 우주의 주재자인 하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神과 소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소유한 존재로 규정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神과 소통하는 예종의 초월적인 권능은 대부분 선왕 세조를 경유하여 발휘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예종의 초월성이 세조를 계승함으로써 획득된 것임을 나타내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예종과 같이 생전에 별다른 치적도 없이 사망하고, 후대에 대한 계통 차원의 의미도 희미했던 왕이 실록 안에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왕권의 소유자로서 서술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조의 왕위를 직접 계승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세조 사후에 예종이 선왕 세조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려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종은 생전에 선왕 세조를 開國에 준하는 再造의 공을 지닌 中興君主로 규정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한 예로 먼저 세조의 諡號와 廟號 문제를 들 수 있다. 예종이 세조의 시호를 논의하도록 명했을 때, 신하들이 처음 제안했던 세조의 시호는 역대 왕들의 것처럼 8글자(시호 4개) 시호였다. 그러나 예종은 애초부터 8글자 이상의 시호를 원했고 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여 결국 예종의 고집대로 20글자(시호 10개)에 달하는 시호가 정해졌다.<sup>57)</sup> 이는 역대 왕들의 시호 가운데 유례없이 긴 시호이다.

시호와 함께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조’라는 묘호였다. 『孔子家語·廟制』에는 祖·宗의 개념에 대해 ‘조는 공이 있고 종은 공이 있다[祖有功而宗有德]’고 하였다. 이후, 조는 창업 군주를, 종은 계승한 임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임이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고려 때에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며 김부식의 글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57)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9월 24일(庚辰) 2번째 기사.

I. 성종 원년(982)에 …… 왕이 신하의 진언을 요구하자 최승로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제가 살펴보니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왕통을 물려주신 것은 이른바 祖는 공이 있다는 것이고, 諸宗이 왕위를 물려받아 위업을 계승한 것은 宗에게 德이 있다는 것입니다. 祖가 나라를 세워 자손의 행복과 경사를 열고 나면 宗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면서 한때의 잘못을 면치 못합니다. …….”(후략)<sup>58)</sup>

실제 묘호로서 祖宗이 부여된 고려왕 중 祖가 붙은 경우는 태조 단 한 명 뿐이었다는 점은, 김부식의 이러한 인식이 고려 시대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조선 시대에 와서도 세조 이전까지 태조 외에는 祖라는 묘호를 가졌던 왕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祖의 의미를 이러한 데에 두고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세조의 아버지인 세종의 묘호에 이미 ‘世’를 썼는데, 그 아들인 세조에게 같은 글자의 묘호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예종이 다른 글자가 아닌 ‘世’를 묘호로 쓸 것을 고집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중국 역사 속에서 世祖라는 묘호를 어떤 왕들에게 붙였는가와 관련된 문제였다. 세조라는 묘호는 전통적으로 나라를 중흥시킨 제왕에게 붙는 묘호였다. 『후한서』 「光武帝紀」에 광무제의 묘호에 대한 李賢의 주를 살펴보면 ‘광무제가 중흥하였기 때문에 묘호를 세조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실제 이후 晋의 武帝인 司馬炎, 元의 忽必烈 등이 世祖라는 묘호를 부여받았다. 예종이 세조에게 再造의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며 묘호를 ‘세조’로 할 것을 주장한 것은 세조를 확실한 ‘中興君主’로 규정하고자 해서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세조의 元年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선왕이 죽은 이듬해를 후대 왕의 원년으로 삼는 ‘躡年稱元法’은 고려 시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부터 적용되어 온 오래된 관례였다.

---

58) 『고려사』 권 93, 「崔承老傳」.

전통적으로 나라를 개국한 태조 외에는 모두 유년칭원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기록상 한 해에 두 왕이 있는 것을 참람하게 여겨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조실록』은 이듬해가 아닌 즉위 당해년을 원년으로 삼는 ‘卽位年稱元法’을 적용하여 편찬하였다.<sup>59)</sup> 이는 단종을 조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세조가 즉위하여 통치한 역사를 단종 재위기라는 위기의 시대를 수습하고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역사로서 편찬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즉위년칭원법을 적용하여 편찬된 『세조실록』은 ‘나라를 다시 연 중흥 군주 세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세조를 중흥 군주로 규정한다고 할 때, 세조의 왕통을 이은 후대 왕은 세조가 받은 천명을 계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즉 예종이 天命의 대리인임을 상징하는 재이·상서 관련 기록들에서 상서를 발생시키는 근원적 존재로서 세조가 등장하는 것은, 세조가 ‘혁명’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天命을 받은 조선 왕실의 中始祖이며, 세조의 왕위를 계승한 예종은 세조가 받은 天命을 계승한 임금임을 암시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조의 역사적 의미가 이처럼 중시조로서 후대에 특별한 것으로 정해진 이상, 세조의 적통으로서 그 왕권을 직접 계승한 예종의 경우, 아주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별다른 治績없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소유한 왕권 자체는 아버지 세조가 가졌던 것과 같이 초월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예종이 그토록 세조에 대해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애썼던 것은, 거꾸로 예종이 나서서 이와 관련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세조에 대한 역사 평가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조는 조카인 端宗의 왕위를 사실상 찬탈하였고, 종래에는 단종을 살해했다. 이로써 세조는 정통성과 윤리적 측면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었다. 즉위

59)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7일(戊子) 4번째 기사.

과정에서 빚어진 정통성과 윤리적 차원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세조 그 자신 때부터도 시도되었는데, 예컨대 불교 상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사람에게 은전을 내렸던 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갖게 된 흠결과 그로 인해 손상된 권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60)</sup>

예종이 선왕 세조에게 중시조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애쓴 것은, 결국 세조의 즉위 과정을 혁명에 준하는 역사로 확정함으로써, 세조의 정통성 및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로 볼 수 있다. 예종의 왕위는 결국 세조에게 직접 계승한 것이었으므로 세조의 정통성 문제는 곧 예종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종의 입장으로는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예종실록』에 나타나는 재이 및 상서 관련 기사들의 서술상의 특징들은 『세조실록』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세조를 중시조로써 규정하는 인식이나,<sup>61)</sup> 왕권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불교적 자연관까지도 동원하는 서술 방식은, 편찬 순서를 고려한다면 『세조실록』 단계에서 정해져 『예종실록』 편찬 때에도 답습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에서 서술 방식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편찬관이 동일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두 실록은 동일한 실록청에서 아울러 편찬한 것이다. 실록청 운영 방식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당시 실록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신숙주·한명회·최항을 주축으로 하는 재상급 관리들이 행사하였을 것인데, 이들은 세조의 공신이었던 정치 이력 상의 공통분모를 가진 인물군이였다.

이들은 세조 즉위 이후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거듭 공신 책봉을 받았고, 이를 통해 功臣田을 획득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장하고, 자손에 대한 음서 혜택을 통해 정치·사회적 지위를 세습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었

60) 권연용, 위의 글, 210쪽.

61) 앞에서 설명하였듯 『세조실록』은 즉위년칭원 방식을 적용하여 편찬하였다.

다.<sup>62)</sup> 즉 그들의 이해기반은 왕에게서 제공 받은 특권을 통해 구축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조의 즉위 과정과 통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그 권위를 초월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이들에게도 유리한 것이었을 것이다. 특히 정난·좌익공신이었던 신숙주·한명회·최항의 경우, 세조가 개창 군주에 준하는 왕으로 규정될 때, 그 자신들은 개국공신에 준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인물들이었다.

예종의 경우, 『예종실록』의 편찬관들이 정치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을 때 권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 이들이 예종 때로부터 성종 때에 이르기까지 정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예종이 이들을 翊戴功臣으로 책봉해주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짧은 재위 기간으로 인해 별다른 치적을 남기지 못한 예종이 『예종실록』 안에서 이처럼 초월적 권능을 지닌 임금으로 서술된 것 역시, 편찬을 주도한 인물들의 정치적 이해기반이 예종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술에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록은 결국 통치 기간 내 왕의 행적을 역사로 엮어낸, 왕에 대한 역사이므로 편찬을 주도한 인물들의 왕 혹은 왕권에 대한 인식은 결국 실록 편찬에 있어 일종의 史觀을 형성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세조, 예종 시기는 편찬관들의 이해기반이 왕의 권위와 긴밀하고 예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 맥락에서 왕의 권위를 초월적으로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리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상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불교적 맥락의 이상 현상까지 동원하는 등 유교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방식을 통해 왕권을 초월적으로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그것이 실록의 서술에도 큰 비판 없이 수용되었으며, 예종의 경우처럼 해당 왕의 역

62) 오종록, 「세조의 즉위과정과 정치문화 변동」, 『人文科學研究』 31, 2013, 314~315쪽 ; 321~322쪽.

사적 의미가 미약한 상황에서도 임금의 권위를 초월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지켜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예종실록』의 바로 다음 실록인 『성종실록』에는 상서와 관련한 기록이 거의 실리지 않았다. 불교적 맥락의 상서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유교적 맥락의 상서인 흰 빛갈 짐승과 관련한 기록도 단지 흰 꿩이 1회, 흰 사슴이 1회, 흰 노루가 1회씩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sup>63)</sup> 그나마도 성종이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 함으로써, 한 번도 상서로 공식화되지 못하였고, 성종이 흰 빛갈 동물을 거부한 이후 신하들 역시 그런 동물을 발견하더라도 상서로 여겨 바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64)</sup> 더욱이 성종의 行狀에는 성종이 흰 사슴을 바쳤을 때 이를 거부하였던 일이 실렸는데,<sup>65)</sup> 이는 상서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성종의 태도를 매우 훌륭한 것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종실록』의 상서관련 기사의 내용 및 서술 방식은 세조 이전 시기의 실록들과 유사하다.<sup>66)</sup> 그렇다면, 앞서 밝힌 『예종실록』과 『세조실록』의 서술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이전까지의 실록들에 관철되어 온 경향성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빚어진 권위의 손상, 예종의 짧은 재위기와 같은 특수한 조건과 임금과 편찬관 사이의 긴밀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예외적 방식이 채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연산군 때에 『성종실록』이 편찬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실록 편찬관들이 그런 예외

63) 『성종실록』에는 흰 빛갈 짐승이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다루고 있는 기사는 흰 꿩에 대한 기사 1건(『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12일(甲午) 5번째 기사), 흰 사슴에 대한 기사 3건(『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3일(戊辰) 2번째 기사 ; 5일(庚午) 7번째 기사 ;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16일(庚子) 3번째 기사), 흰 노루에 대한 기사 1건(『성종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6일(戊辰) 7번째 기사)으로 총 5건이다.

64) 『성종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6일(戊辰) 7번째 기사.

65) 성종의 행장은 『성종실록』 297권 말미에 실려 있다.

66) 주 44) 참조. 한편 상서를 거부했던 일화는 문종의 行狀에도 실려 있다. 이 역시 성종 시기의 상서 인식이 세조 이전 시기의 인식과 유사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적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그 이전에 원칙적인 서술 경향으로 회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7)

---

67) 이는 이 시기 편찬관들의 왕에 대한 인식이 세조, 예종 대와는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인식 형성에 관여할 여러 조건을 따져 봐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예종실록』의 서술 특징이 역대의 실록과 후대의 실록에 대비하면 예외적인 것이었다는 정도를 밝히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 V. 결론

이 논문은 실록이란 왕에 대한 기록이므로 실록을 연구할 때에 반드시 왕과 관련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위에, 해당 왕이 처했던 정치적·역사적 상황을 살피고 그것이 해당 실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밝혀보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는 『예종실록』을 채택하여, 예종 사후 선왕으로서의 예종이 갖는 의미·조건들이 『예종실록』의 제반 사항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II장에서는 『예종실록』의 편찬 과정과 편찬관을 살펴보았다. 『예종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주목한 점은 예종의 짧은 재위 기간으로 인해 『세조실록』에 연이어 편찬되었다는 것으로서, 『예종실록』이 후대에 中始祖로서 강력한 역사적 권위를 획득한 세조의 실록과 그 撰進시기가 겹쳤을 때 똑같은 규모의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예종실록』은 『세조실록』을 편찬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는데, 특히 내용에 결정력을 가진 실록청 1품·2품 관리들은 세조의 훈신이자, 예종의 익대공신이라는 정치 이력 상의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정치 이력에 주의하여 편찬관들의 정치적 이해가 실록의 내용적 측면에 개입될 실마리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예종실록』에서 예종이 어떤 왕으로 서술되고 있는지에 대해 재이·상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종실록』기사 안에서 예종의 권능은 하늘과 맞닿은 초월적이고도 신이한 것이며 동시에 그 권능은 선왕인 세조의 개입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세조의 권위를 근본으로 삼는 속성을 지닌 것을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밝힌 사실을 토대로, 『예종실록』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예종실록』은 예종의 본래적 한계로 인하여 『세조실록』에 비해 그 의미와 권위의 규모가 훨씬 덜 중요한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거기에 서술된

왕권의 속성은 초월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그려졌다. 이처럼 예종이 실록의 기록 안에서만큼은 초월적인 왕권을 지닌 존재로 서술되게 된 것은, 예종이 조선의 중흥 군주로 규정된 세조의 특별한 왕위를 직접 계승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세조의 역사적 의미를 중시조로 규정하고 권위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세조실록』에서 세조의 권위를 서술하는 방식과 유사한 점을 보이는데, 이러한 서술상의 유사성은 두 실록의 편찬관이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세조의 훈신이자 익대공신이었던 그들의 이해기반이 왕의 권위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예종실록』은 다루고 있는 시기적 범위, 담고 있는 정보의 다양성, 상세함의 정도를 놓고 보았을 때, 여타의 조선 전기 실록에 비해 연구 자료로서 갖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초학자로서 자료 선별에 있어 연구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왕에 대한 필자의 선입견이 비교적 명확하면서도 기존 연구 성과가 적은 실록을 고른 탓이다. 그 결과 개별 실록 성격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성격의 한 측면을 대략적으로 제시해보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더 진전된 차원의 논의는 추후 연구를 기약한다.

## 참 고 문 헌

### 1. 史料

『高麗史』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 2. 研究著書

박성래, 『한국 과학 사상사』, 유스북, 2005.

배현숙, 『朝鮮實錄研究序說』, 태일사, 2002.

이희덕, 『高麗儒敎 政治思想의 研究 : 高麗時代天文·五行說과 考思想을 中心으로』, 一潮閣, 1984.

최승희, 『朝鮮初期 政治史 研究』, 지식산업사, 2002.

戶川芳郎·蜂室邦夫·溝口雄三 著, 조성을·이동철 譯, 『儒敎史』, 이론과실천, 1990.

### 3. 研究論文

강문식, 「『조선왕조실록』연구의 현황」, 『조선시대사학보』 74, 2015.

강제훈, 「조선 초기 勳戚 韓明澮의 관직 생활과 그 특징」, 『역사와실학』 43, 2010.

권연웅, 「世祖代의 佛敎政策」, 『진단학보』 75, 1993.

- 김경수, 「『인조실록(仁祖實錄)』의 편찬 과정과 편찬관」, 『충북사학』 10, 1998.
- \_\_\_\_\_, 「조선전기 실록 편찬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20, 2002.
- \_\_\_\_\_, 「『세조실록』의 편찬과 세조 정권」, 『한국사학사학보』 30, 2014.
- 김순남, 「조선 세조대 말엽의 정치적 추이」, 『역사와실학』 60, 2016.
- 김영두, 「실록 편찬에 나타난 세조 정권의 정당성 추구」, 『한국사학사학보』 27, 2013.
- 김인호, 「유교정치이념의 발전과 성리학」, 『한국역사입문② 중세편』, 풀빛, 1995.
- 김태영, 「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87, 1994.
- 박세연, 「조선초기(朝鮮初期) 세조대(世祖代) 불교적 상서(佛敎的 祥瑞)의 정치적(政治的) 의미(意味)」, 『사총』 74, 2011.
- 변태섭, 「高麗國史의 編纂內容과 史論」, 『학술논총』 3, 1979.
- 신석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편찬(編纂)과 보관(保管)」, 『사총』 5, 1960.
- \_\_\_\_\_, 「조선전기편\_문화\_편찬사업」, 『한국사론』 3, 1975.
- 오중록,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54, 2001.
- \_\_\_\_\_, 「申叔舟의 軍事政策과 宰相으로서의 經綸」, 『역사학논총』 3·4, 2003.
- \_\_\_\_\_, 「세조(世祖)의 즉위과정과 정치문화 변동」, 『人文科學研究』 31, 2013.
- 오항녕, 「朝鮮初期 文翰官署의 整備와 史官制度」, 『한국사학보』 7, 1999.
- \_\_\_\_\_, 「《宣祖實錄》 修正攷」, 『한국사연구』 123, 2003.
- \_\_\_\_\_, 「조선전기 춘추관 검직제도의 성격」, 『사총』 60, 2005.
- \_\_\_\_\_, 「正祖초반 『英祖實錄』 편찬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 29, 2006.
- 이성무, 「『朝鮮王朝實錄』과 韓國學研究」, 『민족문화』 17, 1994.

- 이 옥, 「조선전기 국가 기우제와 산천」, 『Journal of Korean Culture』 1, 2000.
- 이정주, 「세조대(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상서(祥瑞)와 은전(恩典)」, 『민족문화연구』 44, 2006.
- 이정철, 「조선왕조실록 가뭄 기록과 그 실제」, 『국학연구』 29, 2016.
- 임승표, 「『光海君日記』의 編纂經緯와 國譯過程」, 『민족문화』 18, 1995.
- 정구복, 「朝鮮前期의 歷史認識」, 『韓國의 歷史認識 上』, 창작과비평사, 1976.
- \_\_\_\_\_, 「朝鮮初期의 春秋館과 實錄編纂」,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 \_\_\_\_\_, 「6.역사학」,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정두희, 「朝鮮 世祖 - 成宗朝의 功臣研究」, 『진단학보』 51, 1981.
- 차용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태도와 사관의 역사의식」, 『한국사론』 6, 1979.
- 차장섭, 「朝鮮前記의 史官 : 職制 및 政治的 役割」, 『복현사림』 8, 1983.
- 최나래, 「조선 초기 세조 국상 연구」, 『역사민속학』 45, 2014.
- 한우근, 「朝鮮前期 史官과 實錄編纂에 관한 研究」, 『진단학보』 66, 1988.
- 한충희, 「朝鮮 世祖~成宗代의 加資濫發에 對하여」, 『한국학논집』 12, 1985.
- \_\_\_\_\_, 「朝鮮(조선) 世祖代(세조대)(1455-1468) 原從功臣研究(원종공신연구)-1,2等功臣(등공신)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22, 2013.
- 허대용, 「『景宗實錄』과 『景宗修正實錄』의 비교를 통해서 본 老論의 정치 의리」, 『사학연구』 112, 2013.
- 홍순민, 「정치세력과 정치운영」, 『한국역사입문② 중세편』, 풀빛, 1995.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Yejong Sillok』

Choi So Young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seon wangjo sillok(朝鮮王朝實錄), with the main focus on overall descriptions of the given kings, under the awareness that the condition of the given kings must be always considered when researching about kings, given the fact that annals describe about kings.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situations which the given kings faced and to overview how influences such situations had on the annals. To attain the purpose, the study selected 『Yejong Sillok(睿宗實錄)』 as the research subject, and investigated how the meanings and conditions that Yejong had as the precedent king after his death influenced overall descriptions of 『Yejong Sillok』.

Firstly, Chapter II deals with the process and viewpoint of compiling 『Yejong Sillok』. What is noteworthy in the course of compiling 『Yejong Sillok』 is that the annal was compiled just after 『Sejo Sillok(世祖實錄)』 due to a short period of the reign of King Yejong. It was considered that

although 『Yejong Sillok』 was compiled at the period 『Sejo Sillok』 was compiled, 『Yejong Sillok』 was not treated with the same honor as 『Sejo Sillok』 that was later given the mighty historical authority as the precedent king who raised the declining royal dynasty. Meanwhile, 『Yejong Sillok』 was compiled in the annal royal office 『Sejo Sillok』 was compiled. Especially, the 1st and 2nd ranking ministers and officials of the annual royal office are those who had exerted influential influences on the descriptions of the annals. They had the common political figures as the meritorious groups of vassals of King Sejo and contributing groups of King Yejong. In this regard, the study investigated the clue that could be provided in the descriptions of the annals based on the political understanding of compilers, mindful of their political history.

Chapter III analyzes about how King Yejong was described in 『Yejong Sillok』, with the main focus on descriptions in the memoir and article. According to the analytic result, the article of 『Yejong Sillok』 shows that King Yejong had transcendental and mysterious authority that touched the hem of the heaven, and at the same time, such authority was embodied by the precedent king Sejo. Judging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rticle reveals one of the character of such authority was to adopt King Sejo's authority as a fundamental base.

Chapter IV summarizes the character of 『Yejong Sillok』, based on the facts that were revealed in Chapter II and III. 『Yejong Sillok』 was considered less important in its meaning and scope of authority, compared with 『Sejo Sillok』 owing to the essential limit of Yejong. Nevertheless, the attribute of royal authority of Yejong was described with the main

focus on transcendency. Such as this, Yejong was described as a king with transcendental royal authority in the annal, based on the fact that he succeeded the special royal throne of Sejo regarded as the king who restored the collapsed royal dynasty.

The way that Sejo was considered the king who raised the declining royal dynasty in history and that his authority was described as being transcendental is similar as the way that the authority of Sejo was described in 『Sejo Sillok』. The similarity in description was caused by the same personal character that the compilers of the two annals had, and the political base of them called the meritorious group having close relationships with king's authority.